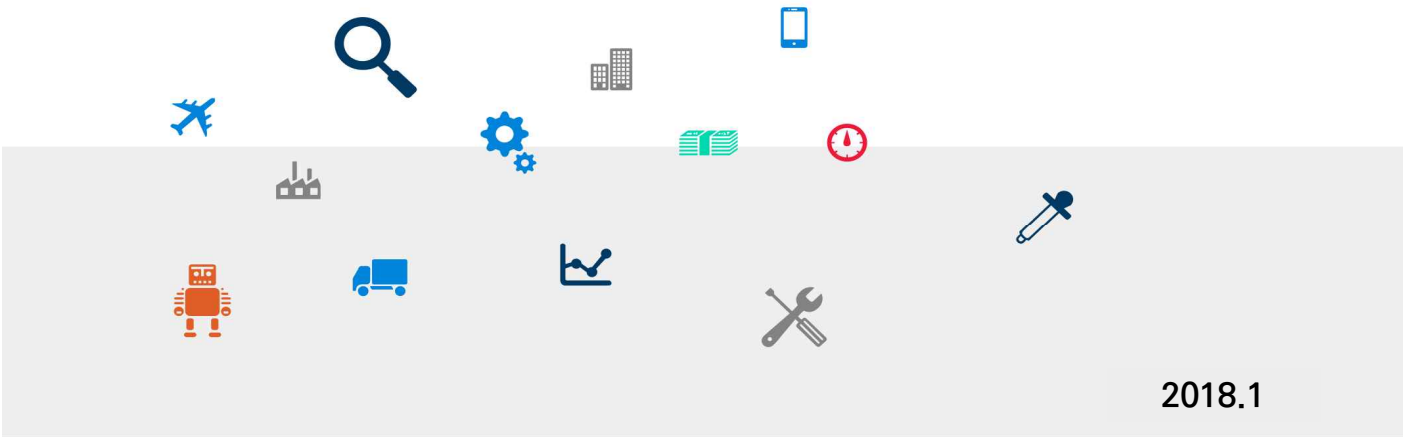


## 6.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





#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



2018.1

## + Contents

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

### I. 사업추진방향

- 01 지원개요
- 02 추진정책
- 03 사업별 개요

### II. 세부 사업별 안내

- 01 기업성장촉진
- 02 생태계 활성화
- 03 인력 및 인프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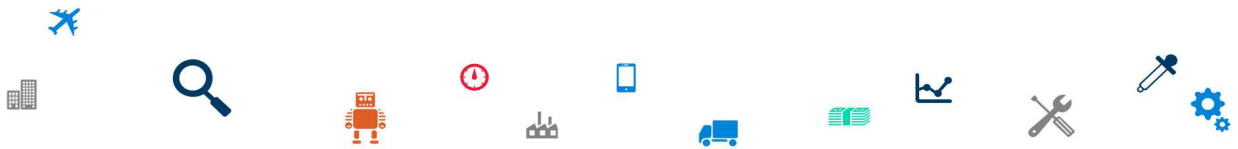
### III. 지원 방법

- 01 지원 방법
- 02 중소기업 기술로드맵
- 03 R&D 준비·수행 시 유용한 정보



# I. 사업추진방향

※ 개별 사업공고 시 일부 내용 변경 가능



## +01 지원 개요

### 지원 규모

| 2018년 1조 839억원(13개 세부사업, 25개 내역사업)

### 지원 내용

#### 01 기본 신청자격

- 중소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
- \* 단,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세부 신청자격 상이

#### 02 지원 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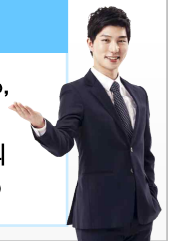
- 정부출연(무담보, 무이자), 총 사업비의 50~80%
- 기업은 민간부담금(총사업비의 20~50%)의 40~60%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

#### 03 지원 한도

- 사업별 최대 2년 이내 2천만원 ~ 6억원 이내  
(단, 월드클래스 300은 최대 5년, 75억원 이내)

#### 04 기술료 (R&D 성공시)

- 정액기술료 : 최대 4년간 중소기업은 출연금의 10%, 중견기업은 출연금의 20%
- 경상기술료 : 5년간 R&D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(정부출연금의 1% + 매출액의 1~2%)





## “중소기업 R&D 혁신”



기술초보기업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**씨뿌리기 방식의 저변확대 R&D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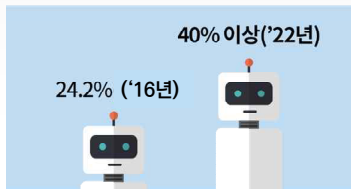


기술혁신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**선택과 집중 방식의 전략적 R&D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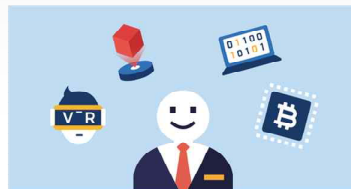
### 전략분야 R&D 중점투자

#### 4차산업혁명 전략분야 투자강화



기업의 디지털 역량강화/ICT·제조업 융합/기업의 신시장 창출

#### 서비스 기술경쟁력 강화



기술융합, 협업활성화를 위해 기업중심의 서비스 R&D 강화

#### 파괴적 혁신과제에 대한 과감한 투자



원천기술보유 중소기업 등 혁신기술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



# +02 추진정책

## R&D 성과확산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

### R&D 기획역량 강화



R&D 스쿨운영, 기술주회사 자회사  
사업화지원, IP기반 R&D활성화

### R&D 평가의 시장원리 도입



기술금융 · VC심사 반영 및  
중소기업 전담 공공연 지정

### 기술금융 연계개발(R&D플러스)



기술보증기금 등과 협력,  
R&D 사업화 자금 확대



# +02 추진정책

## 수요자 중심의 R&D 제도 선진화

### R&D 관리부담 완화



수시모집, 온라인평가확대, 현장평가  
간소화, 정산부담 경감

### 도전적인 R&D 분위기 조성



성실실패범위 확대, 개발유지권고,  
실패과제의 자발적 완성 인정

### 부정사용 예방과 제재의 실효성 제고



넷지방식 자율적 점검 등  
R&D지원의 투명성 제고

# +03 사업별 개요

구분	세부사업명	지원규모(억원)	지원기간	지원한도(억원)	출연비중
기업성장촉진	창업성장 기술개발	2,727	1~2년	2~5	80%
	기술혁신개발	2,269	2년	6	65%
	제품서비스기술개발	83	1년	2	65%
	공정·품질 기술개발	444	1년	0.5~1	75%
	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지원(MC300)	653	5년	75	50%
	재도전기술개발	46	1년	1.5	80%
생태계활성화	산학연협력기술개발	1,395	1~2년	1~4.5	75%
	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	1,702	2년	2~6	60~75%
	중소기업 R&D역량제고	108	4~9개월	0.25	75%
	지역특화산업육성	1,105	2년	2~6	70%
인력 및 인프라	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	246	3년	0.5	50%
	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	43	1년	6	88%
	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	18	1년	예산범위내	100%

\* 위 사항은 개별공고 시 변동될 수 있음



중소벤처기업부

7



중소·벤처기업이 튼튼한 대한민국

중소·벤처기업이 튼튼한 대한민국



중소벤처기업부

## II. 세부 사업별 안내



# +01 기업성장촉진

## 창업성장기술개발

- ☑ 사업목적 :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R&D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촉진
- ☑ 지원규모 : 2,727억원
- ☑ 지원내용

### 창업기업과제(1,922억원)

- > (창업디딤돌과제) 일반 창업기업 및 여성기업 등의 기술개발 지원
- > (혁신 창업과제) 고기술·유망기술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(R&D, R&D+사업화·IP전략)지원
  - R&D : 글로벌지향형, 스피노프형, 기술도입형 및 R&D 집약형 등 4가지 유형의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
  - R&D+사업화 : 창업 후 3~7년 기업으로 신청자격 요건 제한

###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(805억원)

- > (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(TIPS)과제)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(기관)가 발굴·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·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
- > (클라우드펀딩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) 클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술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

### ☑ 지원조건

구 분		개발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출연금 비중	지원방식
창업기업과제	디딤돌 창업과제 (여성참여활성화과제)	최대 1년, 1.5억 원 (최대 1년, 1억 원)	80% 이내	자유공모+품목지정 (자유공모)
기술창업 투자연계과제 (TIPS)	민간투자 주도형(TIPS)	최대 2년, 5억원 (*바이오 분야 7억원)		자유공모, 4차 산업혁명 품목지정
	클라우드펀딩 연계형	최대 1년, 2억원		자유공모, 4차 산업혁명 분야 가점



중소벤처기업부

9



중소·벤처기업이 튼튼한 대한민국

# +01 기업성장촉진

##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

- ☑ 사업목적 : 대·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·혁신형기업 맞춤형 R&D지원을 통해 글로벌 선도 중소기업 육성
- ☑ 지원규모 : 2,269억원
- ☑ 지원내용

### 수출기업기술개발(940억원)

- > (글로벌강소기업) “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”에 선정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
- > (수출유망) 최근 2년 이내 10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1회 이상 달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전략품목 기술개발지원
- > (수출초보) 최근 2년 이내 10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을 1회 이상 달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전략품목 기술개발지원

### 혁신형 기업기술개발(1,329억원)

- > (혁신형기업)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략품목을 기반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이노비즈 또는 벤처기업)의 기술개발지원
- > (글로벌 스타벤처) “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사업”을 통해 추천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

### ☑ 지원조건

구 분		개발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출연금 비중	지원방식
수출기업 기술개발	글로벌강소	최대 2년, 6억원	65% 이내	자유공모
	수출유망	최대 2년, 6억원		품목지정
	수출초보	최대 2년, 4억원		품목지정
혁신형기업 기술개발	혁신형기업	최대 2년, 5억원	65% 이내	품목지정
	글로벌 스타벤처 육성	최대 2년, 5억원		자유공모



중소벤처기업부

10



중소·벤처기업이 튼튼한 대한민국



# +01 기업성장촉진

## 제품서비스 기술개발

- ☑ 사업목적 : 제품의 서비스화, 서비스 분야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중소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 창출,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
- ☑ 지원규모 : 83억원
- ☑ 지원내용
  - | 제품서비스화(51억원)
    - >유망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제품의 서비스화 개발을 통한 신사업 창출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(중소제조업 영위 벤처,이노비즈 기업)
  - | 신규서비스창출(9억원)
    - >기술창업이 활발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구현 지원(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)
  - | 업종공통서비스(23억원)
    - >본점과 지점, 복수의 사업장 보유 기업, 업종별 단체와 회원사 등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구현 지원 (서비스기업 컨소시엄, 관련 협·단체)
- ☑ 지원조건

구 분	개발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출연금 비중	지원방식
제품서비스화	최대 1년, 2억원	65% 이내	자유공모
신규서비스창출	최대 1년, 1.5억원		
업종공통서비스	최대 1년, 2억원		



중소벤처기업부

11



중소·벤처기업이 튼튼한 대한민국

# +01 기업성장촉진

## 공정·품질 기술개발

- ☑ 사업목적 : 제품·공정 개선을 지원하여 시장·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통한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제고
- ☑ 지원규모 : 444억원
- ☑ 지원내용
  - | 제품·공정개선 기술개발(356억원)
    - >(제품개선)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개선 기술개발을 지원
    - >(공정개선)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
  - |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(88억원)
    - > 기술의 파급성 및 공용성이 높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전문기업,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에 대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
- ☑ 지원조건

구 분	개발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출연금 비중	지원방식
제품·공정개선 기술개발	최대 1년, 5천만원	75% 이내	자유공모
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	최대 1년, 1억원		



중소벤처기업부

12



중소·벤처기업이 튼튼한 대한민국

# +01 기업성장촉진

##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기술개발

- ☑ **사업목적** : 글로벌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·중견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
  - 성장전략서 : 해외시장확대, 기술확보, 투자, 경영혁신·고용 등 4개 분야별로 향후 10년간 기업의 성장전략을 기술
- ☑ **지원규모** : 1,088억원(중기부 : 653억원, 산업부 : 435억원)
- ☑ **지원내용**
  - 월드클래스 300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성장에 필요한 중장기 미래전략·원천 기술개발을 지원
  - 금융, 보증, 지식재산권(IP), 인력, 해외마케팅 등 연계지원
- ☑ **지원대상**
  - | World Class 300 선정기업
    - WC 300 미수혜기업
    - 산업통상자원부 우수기술연구센터(ATC)사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 R&D를 수행 중인 기업은 ATC사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R&D 종료 후 World Class 300 R&D 지원사업 신청가능함
- ☑ **지원조건**

구 분	개발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출연금 비중	지원방식
WC300	최대 5년 이내, 75억원 (연간 15억원)	50% 이내	자유공모



중소벤처기업부

13



중소·벤처기업이 튼튼한 대한민국

# +01 기업성장촉진

## 재도전 기술개발

- ☑ **사업목적**

우수한 기술력·경영노하우 등을 보유한 실패기업인에게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사회적 자산의 사장 방지 및 고용창출 등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 사업전환 추진기업에 R&D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
- ☑ **지원규모** : 46억원
- ☑ **지원내용**
  - | **재도전기술개발(38억원)**
    - 우수한 기술력·경영노하우 등을 보유한 실패기업인에게 기술개발을 통해 R&D 역량 및 재기 강화
      - \* 신기술·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(7년 이하) 또는 지원 결정 이후, 1개월 이내 법인 설립이 가능한 자
  - | **사업전환기술개발(8억원)**
    - 사업전환 추진기업에 R&D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
      - \*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으로 한정
- ☑ **지원조건**

구 분	개발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출연금 비중	지원방식
재도전 기술개발	최대 1년, 1.5억원	80%	자유공모
		75%	



중소벤처기업부

14



중소·벤처기업이 튼튼한 대한민국

# +02 생태계 활성화

##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

☑ 사업목적 : 중소기업이 대학·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(인력, 장비 등)를 활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지원

☑ 지원규모 : 1,395억원

☑ 지원내용

▣ 첫걸음협력(387억원) > 정부 R&D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거나,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일지역 대학·연구기관과의 공동R&D 지원

▣ 도약협력(308억원) >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, 매출액 5억 이상 중소기업의 대학·연구기관과의 공동R&D 지원

▣ 전략협력(594억원)

> (산연전용)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의 자체 지원역량과 연계한 공동R&D 지원(연구마을) '중소기업 기술로드맵'에 4차 산업혁명 및 일자리 창출 28대 전략분야 내에서 제안

> (연구마을) 연구인프라가 우수한 대학·연구기관 안에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집적하여 공동R&D 지원

> (지역유망중소기업) 지역유망 중소기업으로 발굴된 중소기업이 동일지역 대학·연구기관과 공동R&D 지원

▣ 연구장비공동활용(106억원) >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, 매출액 5억 이상 중소기업의 대학·연구기관과의 공동R&D 지원

☑ 지원조건

구분		개발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출연금 비중	지원방식
첫걸음협력		최대 1년, 1억원	75% 이내	자유공모
도약협력				자유공모, 품목지정
전략협력	산연전용	최대 1년, 1.5억원		
	연구마을	최대 2년, 2억원		
	지역유망중소기업	최대 2년, 4.5억원		
연구장비공동활용(장비이용료)		3천만원(2회 연장 가능)	60~70% 이내	자유공모

# +02 생태계 활성화

##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

☑ 사업목적

▣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> 대·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판로 확보를 동시에 지원

▣ 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> 혁신형 중소기업의 핵심기술과 사업화지원기관의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글로벌 선진시장 진출 역량 확보

▣ 기술전문기업협력기술개발 > 중소기업 R&D 취약분야에 강점을 가진 기술전문기업과 협력R&D 추진을 통해 R&D사업화 성과 제고

☑ 지원규모 : 1,702억원

☑ 지원내용

▣ 구매조건부신제품(1,438억원) > 국내·외 수요처(공공기관, 대·중견기업, 해외기업 등)의 구매 수요를 전제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

▣ 중소기업네트워크형(153억원) > 혁신형 기술개발 중소기업 및 사업화 지원 기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협력체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

▣ 기술전문기업협력(111억원) > 중소기업 R&D 취약분야에 강점을 가진 기술전문기업과 협력R&D를 지원

☑ 지원조건

구분		개발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출연금 비중	지원방식
구매 조건부	국내수요처	최대 2년, 5억원	60%(수요처15%, 주관기관25%)	지정공모/자유공모
	해외수요처		65%(주관기관35%)	지정공모/자유공모
	민관공동투자	최대 2년, 10억원 (정부5억원, 투자기업 5억원)	75%(주관기관25%)	지정공모/자유공모
네트워크형	기획지원	최대 6개월, 3천만원	75% 이내	품목지정
	R&D	최대 2년, 6억원	65% 이내	품목지정
기술전문기업		최대 1년, 1억원	65% 이내	자유공모

# +02 생태계 활성화

## 중소기업 R&D 역량제고

☑ **사업목적** : R&D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 지원과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여 기획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

☑ **지원규모** : 108억원

☑ **지원내용**

### R&D기획지원(57억원)

> (R&D기획지원)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R&D과제의 기술 및 시장 분석,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략 수립 등 기획 지원

\* 창업 및 R&D 초보기업을 위한 멘토링과제와 4차 산업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전략과제로 구분 지원

> (R&D기획역량강화교육·코칭) 중소기업 임직원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R&D기획→기술개발→사업화를 포괄하는 교육 및 코칭 실시

☑ **맞춤형기술파트너 지원(51억원)** > R&D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애로를 공과대학의 교수(전임강사 이상)를 매칭하여 해결 지원

☑ **지원조건**

구 분		개발기간 및 지원한도		정부출연금 비중	지원방식
R&D 기획 지원	R&D기획지원	멘토링과제	최대 2개월, 5백만원	80%	자유공모 품목지정
		전략과제	최대 4개월, 25.5백만원	75%	
	R&D기획역량강화 교육·코칭	2일 이내		100%	-
맞춤형 기술파트너		최대 1개월, 3천만원		50%~75%	자유공모

# +02 생태계 활성화

## 지역특화산업육성

☑ **사업목적**

☑ **지역주력산업육성** > 지역 내 기업 매출 신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해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

☑ **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** > 시·군·구의 성장잠재력 있는 지역자원을 발굴·육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 체감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

☑ **지원규모** : 1,105억원

☑ **지원내용**

### 지역주력산업육성(802억원)

> (주력산업기술개발) 지역별로 여건·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\*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

\* 국비 2억원당 1명 신규채용 계획 제출 의무화

> (융복합기술개발) 지역주력산업 관련 제품에 타산업분야 기술(CT, 서비스 등)을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및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

### 지역연고산업육성(240억원)

> (풀뿌리기업육성) 시·군·구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사업화 통합지원

☑ **지원조건**

구 분		개발기간 및 지원한도		정부출연금 비중	지원방식
지역주력산업육성	주력산업기술개발	최대2년, 6억원 (연간 3억원 이내)		70% 이내	자유공모
	융복합R&D				자유공모
지역연고산업육성	풀뿌리기업 육성사업	최대2년, 10억원 (연간 5억원 이내)			자유공모

# +03 인력 및 인프라

##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

- ☑ **사업목적** : 고급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
- ☑ **지원규모** : 246 억원
- ☑ **지원내용**
  - | (Track 1)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
    - >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파견하여 연구역량 전달 및 기술개발 지원
  - | (Track 2) 신진 석·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
    - > 중소기업에서 신진 석·박사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
  - | (Track 3)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
    - > 공공연·대학·대기업 등의 경력을 지닌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일부를 지원하여 고급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확대 및 기업 R&D 역량 강화
- ☑ **지원조건** : Track별 지원내용

구 분	지원기간 및 지원내용	정부출연금 비중			
(Track1)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	3년 이내(1회 한하여 최대3년 연장),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%지원	50% 이내			
(Track2) 신진 석·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	최대 3년, 석·박사 기준연봉의 50%지원		구 분	석사	박사
			기준연봉	4,000만 원	5,000만 원
		정부지원	2,000만 원	2,500만 원	
(Track3)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	최대 3년, 기업계약연봉의 50%지원 (최대 5,000만원 한도)				

# +03 인력 및 인프라

##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

- ☑ **사업목적** : 산업계, 대학 및 정부가 상호 유기적으로 수요자 기반의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공과대학생의 전공역량 강화 등 공대 혁신을 비롯해 고교생의 현장 직무능력 제고 등 기술개발 역량을 확충
  - \* 지역 중소·중견기업 R&D 산업인턴 지원, 기업주도형공학실무역량평가, 산업기술인력 성공모델 지원
- ☑ **지원규모** : 43억원(산업부)
- ☑ **지원내용**
  - | **산업인턴지원** > 공대 재학생의 기업현장 기반 R&D 실무역량 향상과 지역 중소·중견기업 맞춤형 R&D 전문인력 양성기반 확충 지원
  - | **공학실무역량평가**
    - > 대졸수준의 공학인력이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산업현장에서 비즈니스 및 공학기술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는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실무활용 종합능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 마련 지원
  - | **성공모델 지원**
    - > 바이오 및 정밀기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스위스의 직업교육시스템을 활용, 글로벌 기술인력(Meister) 육성 모델 마련 지원
- ☑ **신청자격** : 기업, 대학, 연구소, 사업자단체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컨소시엄 등
  - \* 단,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,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사업자 선정 공고 시 안내 예정임
- ☑ **지원조건**

구 분	개발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출연금 비중	지원방식
지역 중소·중견기업 R&D 산업인턴 지원	최대 1년, 6억 원	90% 이내	품목지정
기업주도형공학실무역량평가	최대 1년, 3억 원	100%	-
산업기술인력 성공모델 지원	최대 1년, 3.3억 원	100%	-

\*지원대상 분야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. \*연차·단계 평가를 통해 예산감액 또는 지원중단 가능

# +03 인력 및 인프라

## 혁신형 일자리 선도

☑ **사업목적** :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비해 新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 나갈 '청년혁신가' 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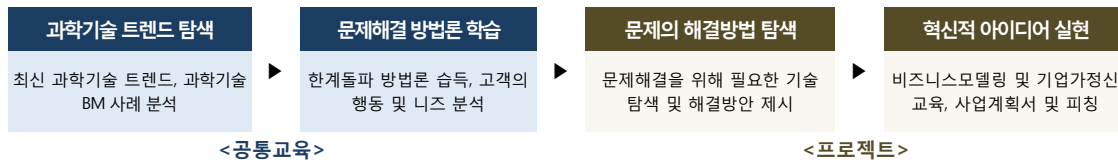
\* 청년혁신가: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나가는 청년 인재

☑ **지원규모** : 18억원

☑ **지원내용**

### 청년혁신가 육성 과제

>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, 디자인 사고(Design Thinking) 등에 기반한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과정 기획·운영 기관 공모



☑ **지원조건** : 지역, 사회 및 산업의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청년

☑ **지원조건**

구 분	개발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출연금 비중	지원방식
청년혁신가 육성과제	최대 1년, 1억원 이내	100% 이내	자유공모

## III. 지원 방법



# +01 지원방법



## 사업공고

-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홈페이지 공고
- \* 사업별 추진일정은 통합공고문 참조



-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 
<http://www.mss.go.kr>
-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
<http://www.smtech.go.kr>



## 신청방법

-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
-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
<http://www.smtech.go.kr>
-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온라인 과제관리 → 과제신청 → 사업계획서 내용입력
- \*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 참조



# +02 중소기업 기술로드맵



### 기술로드맵 수립 전략 [smroadmap.smtech.go.kr](http://smroadmap.smtech.go.kr)

-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의 전략기술 제시 - 기술수준, 시장동향, 주요 경쟁자 등  
\*상대국 정부·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선정된 기술교류 유망 산업, 품목 분야 기술 보유 기업 우대
- 중소기업 기술개발 우선과제로 지원 : 품목지정형 자유공모

### 기술로드맵 추진 프로세스

전략분야 설정 및  
기술수요조사

전략분야 분석 및  
전략제품 선정

전략제품 분석 및  
R&D사업 연계

요소기술 도출 및  
핵심기술 선정

로드맵 기획 및  
심층분석

### '18년 주요 기술 : 4차산업혁명 (15개 분야), 중소기업 성장 (13개 분야)

#### 4차산업혁명 (15개)

AI·빅데이터	5G	정보보호
지능형 센서	AR/VR	스마트가전
로봇	미래형 자동차	스마트 공장
바이오	웨어러블	물류
안전	에너지	스마트홈

#### 중소기업 성장분야 (13개)

디지털콘텐츠·디자인	컴퓨터인프라	임베디드SW
금속 및 세라믹 소재	화학 및 섬유소재	생산기반
LED·광	디스플레이	산업·일반 기계시스템
정밀·마이크로기계	조선	항공우주
의료서비스·기기		



# +03 R&D 준비·수행 시 유용한 정보

종합관리시스템 ( www.smtech.go.kr ) → 고객센터 → 온라인매뉴얼 → 동영상강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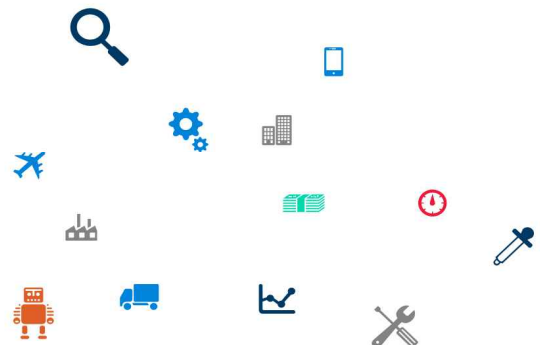


## 종합관리시스템

- R&D 기획 방법 및 프로세스
- 사업계획서 작성방법
- 온라인 과제 신청방법
- 대면평가 준비
- R&D 과제수행 (협약, 사업비 집행, 최종평가 등)
- 사업화 기획 및 우수기술 기획 사례
- R&D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

중소·벤처기업이 튼튼한 대한민국

# 감사합니다





## 7. 창원고용노동지청





함께 일하는  
나라, 행복  
한 국민

#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

 창원고용노동지청

## CONTENTS

1 청년 고용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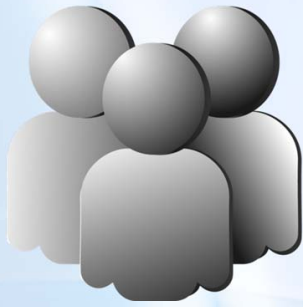
2 일자리 안정자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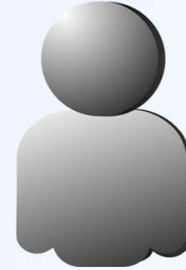
✓ . 청년 고용지원



□ .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(2+1)



성장유망업종에서  
청년 정규직 3명 채용



청년 3명당 1명분  
인건비 지원

연 2,000만원 한도  
3년간 지원

✓ . 청년 고용지원



□ . 청년내일채움공제

▪ 중소·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 지원

(근로자) 만 15 ~ 34세 청년

(기업)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

정부  
900만원  
적립

청년 300만원 적립

기업  
400만원  
적립

2년후, 청년  
1,600만원  
목돈 마련

기업 채용유지지원금  
2년간 700만원 지원

## ✓.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



### □. 일자리 안정자금(사업주 지원)

- '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사업주 경영부담 완화

30인 미만  
고용 사업주



월평균 보수  
190만원  
미만 근로자



근로자 1명당  
월 13만원 지원

## ✓.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



### □. 지원대상

사업주

- 30인 미만 기업
  - 최초 신청 시 30인 미만 여부 판단
  - 지급희망월 기준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평균 근로자수(상용, 일용, 적용제외 포함)
  - 공동주택 경비원·청소원 예외
- 최저임금 준수
- 고용보험 가입
- 지원기간 동안 고용조정 시 지원 제외

## ✓.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



### □. 지원제외

#### 사업주

- **고소득 사업주(과세소득 5억 초과)**
  - 국세청 신고 소득자료 기준 판단
  - (개인) 사업소득금액, (법인) 당기순이익
- **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**
- **국가 등 공공기관**
- **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받는 사업주**
  - 인건비, 운영비 등 직접 or 바우처 등 간접지원
- **인위적 고용조정으로 30인미만 충족**

## ✓.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



### □. 지원대상

#### 근로자

- **(상용)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**
- **(일용) 1일 8시간 기준 87,000원 미만**
- **(단시간) 최저임금 100~120% 범위내**
- **1개월(일용 15일) 이상 고용된 근로자**
- **고용보험 가입**
- **최소한 전년도의 임금수준 유지**
- **(지원제외) 사업주,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1개월 미만 고용유지 근로자**

## ✓.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



### □. 지급금액(근로복지공단 심사 → 지급)

-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⇒ 1인당 월 13만원
- 일용근로자 ⇒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

월 근로일수	월 평균 근로일수	월 지급액
22일 이상	22일	130,000원
19일 이상 ~ 21일 이하	20일	120,000원
15일 이상 ~ 18일 이하	16.5일	100,000원

- 단시간근로자 ⇒ 근로시간 비례 지급

소정근로시간 (주 단위)	지급기준 (평균시간)	월 지급액	소정근로시간 (주 단위)	지급기준 (평균시간)	월 지급액
30 ~ 40시간 미만	35시간	120,000원	20 ~ 30시간 미만	25시간	90,000원
10 ~ 20시간 미만	15시간	60,000원	10시간 미만	5시간	30,000원

## ✓.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



### □. 지급방식(근로복지공단)

지급  
시기

- 연 1회 신청(2.1.이후 신청) → 매월 지급
- 2회분 이후 : 매월 10, 20, 30일 중 선택
- 지원대상자, 급여내역 등 변경 시 변경신고
-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

지급  
방법

- 직접 (현금)지급
- 사회보험료 대납

## ✓.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



### □. 신청(사회보험3공단, 고용센터, 주민센터)

#### 온라인

- '일자리 안정자금' 홈페이지
- 5인 이상 사업장은 온라인 신청 원칙
- 사회보험 3공단, EDI 시스템,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

#### 오프라인

- 사회보험 3공단, 고용센터, 주민센터
- 팩스, 우편, 방문
- 5인 미만,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

## ✓.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



### □. 신청주체 (사업주)

####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

- 기 가입사업장 및 근로자
- 월 평균 보수변경신고서
-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
- 고용보험 성립신고서+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
- 일용 근로자 :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

#### 첨부 서류

- 첫달 임금지급 자료
- 체크리스트(자가진단용), 지원세부내역 작성



## ✓.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



### □. 신청주체 (사업주)

고용보험  
적용제외  
사업장

-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지급신청서  
- 별도 서식, 근로복지공단에서만 신청 가능

첨부  
서류

- 사업주 입증서류(사업자등록증 등)
- 근로계약서, 고용유지 확인서류(매월)
- 첫달 임금지급 자료
- 체크리스트(자가진단용), 지원세부내역 작성

## ✓.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



### □. 공동주택 경비원·청소원

지원  
요건

- 30인 미만 여부 미적용
- 해당 노동자 요건 동일하게 심사

신청

- 용역업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 
아파트 단지별로 신청서 제출
- 입대익와 맺은 표준협약서 첨부
-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

지급

- '입주자대표회의' 통장으로 지급

## ✓.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



### □.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지원대책

**두루누리 사업  
지원 강화**  
(10인 미만 사업체)

- 지원대상 월 140만원 → 월 190만원
-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 60% → 80~90%

**건강보험료  
50% 감면**  
(30인 미만 사업체)

- 대상 :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 시 사업주 및 노동자 ('18년 한시)

**사회보험료 일부담액  
50% 세액공제**  
(10인 미만 중소기업)

- 최저임금의 100~120% 수준의 기존 재직자 4대보험 신규가입 시 (2년간 세액공제)

## ✓. 지원사업 안내

자세한 내용은

근로복지공단(1588-0075)으로 문의 또는  
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([jobfunds.or.kr](http://jobfunds.or.kr))를  
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\* 일자리 안정자금 1588-0075

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055-239-0960

청년내일채움공제 055-239-0950